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지정기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1.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기관	2명 이상의 기술직과 2명 이상의 기능직을 갖춘 것	가. 면적이 900㎡ 이상(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30m 이상)인 검사장을 갖춘 것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춘 것. 다만, 4)와 5)의 장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다기능 표준음발생기(31.5Hz 이상 16kHz 이하) 1대 이상 2)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200Hz 이상 500Hz 이하 나) 1,000Hz 3) 마이크로폰 6대 이상 4) 녹음 및 기록장치(6채널 이상) 1대 이상 5) 주파수분석장비: 50Hz 이상 8,000Hz 이하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6)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높이 10m 이상)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6대 이상 7) 평가기준음원(reference sound source) 발생장치 1대 이상
2.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관		가. 배경소음이 20dB(A)이하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향실(반무향실) 또는 잔향실의 검사장을 갖춘 것 1) 무향실(반무향실): KS A ISO 3745 부속서 A 또는 부속서B의 무향실(반무향실) 적합성 기준 2) 잔향실: KS A ISO 3741 부속서A의 잔향실 적합성 기준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춘 것. 다만, 4)와 5)의 장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다기능 표준음발생기(31.5Hz 이상 16kHz 이하) 1대 이상 2)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

		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200Hz 이상 500Hz 이하 나) 1,000Hz 3) 마이크로폰 6대 이상 4) 녹음 및 기록장치(6채널 이상) 1대 이상 5) 주파수분석장비: 50Hz 이상 8,000Hz 이하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6)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4대 이상 7) 평가기준음원 발생장치 1대 이상
3.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관		가. 배경소음이 45dB(A) 이하인 검사장을 갖추는 것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추는 것. 다만, 3)과 4)의 장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200Hz 이상 500Hz 이하 나) 1,000Hz 2) 마이크로폰 2대 이상 3) 녹음 및 기록장치(2채널 이상) 1대 이상 4) 주파수분석장비: 50Hz 이상 8,000Hz 이하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5) 인체 귀 모형 측정시스템(Head and Torso System) 1대 이상

비고: 기술인력란의 기술직 및 기능직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소음·진동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음·진동 관련 분야 자격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소음·진동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기능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환경 및 기계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